

인천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0가합524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김승식

피 고 1. B

2.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추홀

담당변호사 문옥

3. D

변 론 종 결 2022. 10. 25.

판 결 선 고 2022. 12.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에 관하여 2019. 5. 17. 체결된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는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다.
- 2) E은 건축 및 분양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E의 배우자, 피고 C은 피고 B의 모친이자 E의 장모이다.
- 3) F은 'G'을 운영하며 E으로부터 인천 동구 H 지상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수행한 사람이고, I는 위 신축공사 관련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 4) 피고 D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 등

- 1) 피고 B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건축을 위한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아 위 집합건물을 신축하던 중 2019. 5. 17. 피고 C과 사이에 건축주를 피고 C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변경신고를 마쳤다.
- 2) 피고 D는 2019. 10. 23. 피고 C으로부터 위 건축주 명의를 인수하였고, 2020. 3. 20. 이 사건

집합건물을 완공하여 피고 D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8. 5. 24.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B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은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은 악의의 수익자, 피고 D는 피고 C으로부터 다시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은 악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B, C의 주장

E이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사업을 수행하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것이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판단

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주체가 누구인지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5. 24. I를 통하여 피고 B 명의 계좌로

181,000,000원¹⁾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 8호증, 을 제4,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E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①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E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20가합66502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의 부탁으로 2018. 5. 24. F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후 F이 그중 100,000,000원은 E이 사용하였으므로 E이 변제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E은 2018. 8. 10. 이에 대한 이자 11,6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원금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주장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주체가 피고 B이라고는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E과 이 사건 대여금 이외에도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여 온 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③ 원고와 E은 2019. 5. 29. E이 이 사건 집합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④ 원고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교부받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C에게 이전하였다’면서 피고 B을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0. 15. ‘E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며 피고 B의 계좌를 사용한 것일 뿐 피고 B이 위 대여금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B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⑤ 증인 E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 B이 아닌 E이다’라고 증언하였고, 증인 F 또한 ‘이 사건 대여금을 사용한 사람은 E이다’라고 증언하였다.

나.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민석, 판사 정제민, 판사 이경호

1) 대여금 200,000,000원에서 선이자 9,000,000원을 제한 금액으로 보인다.